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일, 전현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9. 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2024. 9. 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4. 9. 1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전체회의(2024. 9. 1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현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통상의 절차대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이해충돌 관계에 있음에도 제척, 기피, 회피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이기에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 직무범위의 포괄성,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권

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배우자 김건희의 알선수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 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유상범 위원)

- 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문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여야가 협상해왔음. 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사법권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발동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임.
- 내용상 수사대상도 불명확하고, 야당에서 고른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김승원 위원)

- 수사대상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정을 했음.
-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